

IT 융합대학원 원우회 회칙

제 1 장

제 1 조(목적) IT 융합대학원 원우회(이하 "본회"라 한다)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술연구에 정진하며, 전문인 으로서의 지역사회와 본 대학원 발전 및 회원원우의 학업성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명칭) 본 회는 아주대학교 IT 융합대학원 학생회 (이하"원우회"라 한다)라 한다.

제 3 조(소재지) 본 회는 아주대학교 IT 융합대학원내에 둔다.

제 4 조(사업)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
1.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상부상조
2. 연구발표, 학술경연, 그룹스터디 및 멘토링 사업 주관
3. 회원권익을 위한 대내외 학술활동
4. 간행물 발행
5. 대학원 발전을 위한 홍보활동
6.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회원

제 5 조(구성 및 자격) 본 회의 회원은 아주대학교 IT 융합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.

제 6 조(권리와 의무)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.

1. 회원은 본 회칙에 의하여 발언권,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갖는다.
2. 회원은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.

(단, 회비 미납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)

제 3 장 임원

제 7 조(구성)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인 (봉사장학 대상)
2. 부회장 1인 (봉사장학 대상)
3. 사무총장 1인 (봉사장학 대상)
4. 학기 별 기수 대표 (기수 별 1인)
5. 기타 원우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~4항 외 직책 및 인원을 신설, 변경, 폐지할 수 있다.
6. 원우회 위원의 직책을 가지지 않는 그룹스터디 및 멘토링의 리더로 참여하는 원우는 봉사장학의 대상이되 총 6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.

제 8 조(임원의 자격 및 선임)

1. 회장은 원우회 회원 중 1년이상 남은 회원 중에서 민주적 선거방식에 의하여 선출한다.
2.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회장선거결과 득표순으로 임명한다.
3. 입후보 인원이 직책보다 적을 경우에는 직책희망자를 지원받아 임명한다.
4. 임명 대상자 본인의 임명 미동의 시에는 차순위 득표자가 해당직책의 임명 대상이 된다.
5. 위 1~4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미달일 경우에는 당선회장이 지명하고 지명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.
6. 각 기수 대표는 해당 기수 원우 중 지원자로 선출하도록 하며, 지원자가 없을 시 회장이 임명한다.

제 9 조(회장의 임기)

1. 회장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며 임기는 선거 당년 7 월 1 일부터 익년 6 월 30 일
까지로 한다.

2. 회장의 공석 시에는 잔여기간 범위 내에서 보선으로서 총원할 수 있다.

제 10 조(임원의 직무) 본 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각종 업무 및 회의를 관장한다.
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각종회의, 행사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
총괄적으로 기획 및 관장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3. 사무총장은 본 회의 재무 관리업무, 교학팀 관련 업무 및 재정 전반에 관한
사항을 관장하며, 원우회 회원의 경조사 발생시 회칙에 의한 후속 조치를
주관한다.

4. 기수대표는 본 회의 임원으로서 소속 기수를 대표하며, 회장 및 부회장을보좌하여
본 회의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행사 참여를 독려하는 등 기수 내 원우 간의 소통과
단합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

7. 고문은 본 회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, 임원회에 출석하여
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.

8. 원우회의 모든 임원은 본 회칙 제 1 장 4 조의 각 항 목적을 달성을 위한 활동에
의무를 진다.

제 11 조(고문) 본 회의는 다음의 자격을 가진 고문을 둘 수 있다.

1. 전임 원우회 임원 중 회장이 지명하는 자는 지명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
임명한다.

제 4 장 선거관리 위원회

제 12 조(선거공고일) 현임 원우회장은 임기종료 이전에 선거일시, 선거장소, 선거방법 및 후보자 등록일정 및 방법등을 포함하여 차기원우회장 및 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.

제 13 조(후보자 등록) 원우회장 후보자는 공고된 일정 안에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.

제 14 조(구성) 선거관리위원회는 원우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우회장이 된다.

제 15 조(선거결과) 선거결과는 선거 종료 일주일 내에 위원장의 선포 및 공지로 완료한다.

제 5 장 총회

제 16 조(총회)

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2. 정기총회는 매년 2 회 개최하고 일주일전에 공고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 -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- ② 원우 재적회원 2 분의 1 이상의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

제 17 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
1. 회칙의 개정
2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3. 임원의 선임
4. 사업계획의 수립
5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

제 18 조(의결정족수)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단, 가부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제 6 장 임원회

제 19 조(구성) 원우회의 임원회 구성은 제 7 조와 같다.

제 20 조(자격) 임원은 1 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회원을 원칙으로 하나, 회장이

필요하다고 판단 시 신입 회원 중에 선임할 수 있다.

제 21 조(임원회 운영)

1. 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, 회장 유고시에는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2. 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임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.
3. 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4. 임원회의 의결 사항이 제 17 조 총회 의결사항을 우선할 수 없다.

제 7 장 재정

제 22 조(수입 자원)

1. 본 회의 수입 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① 원우회비
 - ② 특별회비
 - ③ 찬조회비
 - ④ 기타 자원
2. 원우회비는 10 만원을 기본회비로 하여 매학기 등록금과 함께 징수하며, 필요 시 임원회에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
3. 특별회비는 별도로 정하여 원내 및 원회원으로 징수한다.
4. 찬조회비는 회원 및 기타 모든 이로부터 회사 받을 수 있다.

제 23 조(재정관리) 본 회의 재정은 원우회에서 관리한다.

제 24 조(예산 및 집행) 예산 및 집행은 다음 각호에 의거 시행한다.

1. 임시 및 정기 총회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의한 편성 및 집행.
2. 1 항외 예산 사용 소요가 발생시에는 임원회의 의결 후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.

제 25 조(결산보고) 본 회의 결산 보고는 년 2 회(학기말) 또는 원우회 임원회 변경 시 실시하여 회원에게 보고한다.

제 26 조(회계연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제 7 조의 원우회장 임기와 같다.

제 27 조(경조비)

경조비 지급 기준내역

항 목		지원	비 고
결혼	회원 본인/자녀	화환 또는 경조금	10 만원/인 상당
조의	회원 직계존속/비속	근조기	본인 조부모/부모/자녀 배우자 부모

단, 본인 결혼 시 본인이 원할 경우 아주대학교 IT 융합대학원 명의의 화환 또는 경조금 중 선택 가능함.

단, 모든 경조사 지원은 해당 학기 원우회비 납부자 혹은 3 학기 이상 원우회비 납부자에 한해 지급함.

제 8 장 회칙개정

제 28 조(개정) 회칙의 개정은 제 16 조 2 항에 의하여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이를 행한다.

제 29 조(발의) 개정 발의는 임원단 회의를 통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여야 하며 개정안 결정여부는 제 18 조에 따른다.

부칙

1. 본 회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회칙은 2015년 5월 1일 개정하여 2015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
3. 본 회칙은 2022년 2월 20일 개정하여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본 회칙은 2025년 6월 24일 개정하여 2025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